



제 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표준계약서 사용 시 재정지원 우대근거 신설 〉

■ 강유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24호)

2024.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강유정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2024. 5. 30.

다. 회 부 일: 2024. 6.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창작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장에서의 공연예술창작계약서, 공연예술출연계약서, 공연예술기술 표준근로계약서, 공연예술기술 표준용역계약서 등 표준계약서의 평균 사용률이 69.4%로 집계됨.

이에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공연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공연예술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공연 현장의 용역계약에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계약을 사용하는 공연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공연예술에 관한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u> <u>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사업자 또는 공연사업자단체에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u> <u>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을 사용하는 공연사업자 및 공연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공연예술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u>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2. 검토의견

표준계약서는 특정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내용을 정형화하는 ‘표준계약양식’으로, 「예술인 복지법」 제5조¹⁾는 국가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함.

동법 시행규칙²⁾에 따라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 기간, 계

- 1) 「예술인 복지법」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국가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2)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하여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4. 업무 또는 과업의 시간 및 장소
 5.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계약 금액
 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8.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

약 금액 및 업무·과업의 범위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애니메이션 분야, 출판 분야, 공연예술 분야 등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고시³⁾하고 있으며,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① 출연계약서, ② 창작계약서, ③ 기술지원근로계약서, ④ 기술지원용역계약서, ⑤ 대관계약서의 5종을 고시하였음.

그러나 2021년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률은 음악·국악·무용·연극 4개 분야 평균 63.8%이고, 서면계약 체결 경험 중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의 평균 사용률은 69.4%로,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이 부족하여 사용률이 높지 않은 상황임.

[공연예술 분야 계약 체결 및 표준계약서 사용률]

(단위: %)

분야	음악	국악	무용	연극
계약 체결 경험	60.3	54.7	62.8	77.4
서면 계약	53.1	51.7	59.8	73.0
구두 계약	7.2	2.9	2.9	4.4
표준계약서	64.7	70.4	67.5	75.0

주)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은 예술작품 발표 1회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서면 계약 경험자를 대상으로 함.

자료: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10.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1.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의무의 승계금지

12. 분쟁해결 관련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표준계약서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애니메이션 분야,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방송출연, 이스포츠 선수, 출판 분야, 공예분야, 방송 분야, 미술 분야, 공연예술 분야, 디지털콘텐츠(영상·음악) 공급, 만화 분야 등

이에 개정안은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 복지법」 뿐 아니라 공연예술 분야의 표준계약서 사용 및 확산에 대한 근거를 「공연법」에 개별적으로 마련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시 재정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이는 공연예술 분야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제고함으로써, 공연예술 창작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공연예술 분야에 공정한 계약 체결 관행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 제10조의3제1항 및 제2항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주체를 ‘공연사업자 및 공연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공연사업자 또는 공연사업자단체의 명확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공연자”를 “공연을 주재(主宰)하거나 직접 하는 자”로만 정의⁴⁾하고 있어 계약 관계에 따른 대상별 정의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이는 창작, 기획, 제작의 영역이 중첩되어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공연예술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현재 고시되고 있는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에도 ‘창작자’, ‘공연제작자’, ‘실연자’ 등 행위를 기준으로 권리주체를 구분하고 있는바, 개정안의 경우에도 표준계약서의 적용 범위를 ‘공연의 창작, 기획, 제작, 유통 등 공연과 관련된 계약을

4) 「공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연자”란 공연을 주재(主宰)하거나 직접 하는 자를 말한다.

하려는 자'와 같이 행위 기준⁵⁾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표준계약서의 제정·개정 과정에 관련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한 안 제10조의3제3항의 경우에도, '사업자단체'의 정의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자'로 수정하여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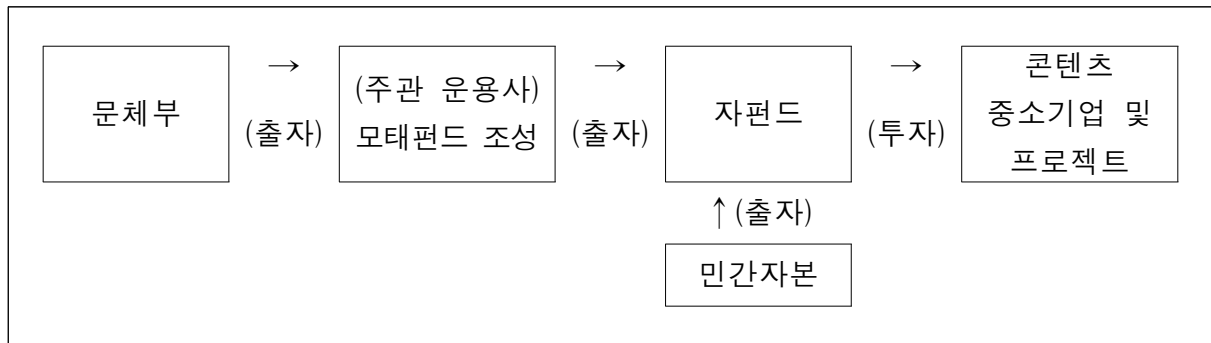
법률명	조 문
미술진흥법	제17조(표준계약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서로 다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표준계약서의 사용 권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만화산업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관련 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표준계약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5) 공연예술과 유사하게 창작, 기획, 제작, 유통의 영역이 중첩되는 미술 분야의 경우에도, 「미술진흥법」 제17조제2항은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고시하도록 하여, 행위 기준으로 표준계약서를 규정하고 있음.

둘째, 안 제10조의3제2항은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해 재정지원 우대의 근거를 신설하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⁶⁾에 따라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문화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투자회사 및 투자조합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정부가 모태펀드를 조성한 후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재간접투자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음.

-
- 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제2항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그 회사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문화산업 및 관련 제작자에 대한 투자
 2. 문화상품 제작자에 대한 투자
 3.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모집과 관리
 4. 투자조합자금의 관리
 5. 문화상품 제작자를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알선
 6. 문화산업에 관한 첨단기술, 설비 및 전문인력 등의 알선과 경영 자문
 7. 창업을 위한 상담 및 제작 활동의 지원
 8. 문화상품의 유통 촉진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저작권 관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제4호의 투자조합자금 관리는 특정 문화상품의 제작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포함한다.
- ④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투자조합) ① 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와 투자회사 외의 자가 출자하는 투자조합을 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개요, 출자계획, 수익의 배분계획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투자회사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조합의 범위 및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 절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예술 분야의 표준계약서 권장 및 재정 지원 우대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필요하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투자조합의 투자는 행위 주체가 민간이므로 이를 재정 지원 우대 조항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9